##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

제정 2022. 12. 29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흥원의 건강한 근무환 경을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진흥원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진흥원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.
- 제3조(원장의 책무)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매년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.
- 제4조(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) 진흥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- 2. 지속·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 - 3.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- 4.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  - 5.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  - 6.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 - 7.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
  - 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
  - 8.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주지 않는 행위
  - 9.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
- 제5조(직장 내 괴롭힘 고충전담창구 및 상담원)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·대응 업무의 처리와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전담창구 (이하 "괴롭힘 고충전담창구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원장은 괴롭힘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,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직 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괴롭힘 고충상담원(이하 "상담원"이라 한다)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 및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원장은 상담원에게 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기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"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  -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
    - 2.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
    - 3.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
    - 4.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
    - 5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
    - 6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
    - 7.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주요내용
  - ③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제7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)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  - 1. 사건의 접수
  - 2.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확인
  - 3.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
  - 4.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
  - 5.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,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
- 제8조(사건의 접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괴롭힘 고충 전담창구에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[별지 제1호]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 의한다.
  - ③ 원장은 제 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.

- **제9조(상담)** ① 제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하다.
  - ②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.
    - 1. 신고자·피해자,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
    - 2.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상황
    - 3.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
    - 4. 괴롭힘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
  - 5.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(목격자, 이메일, 녹음, 메신저 대화내용, 일기, 치료기록 등) ③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.
  - ④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진흥원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,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.
  -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,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.
- 제10조(당사자 간 해결)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를 통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약식 조사를 실시하며,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조사 후에 상담원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약식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.
    - 1.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(우위성 판단요소)
    - 2.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경위
    - 3.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(직접증거 또는 정황증거)
    - 4. 피해자의 피해정도
    - 5. 피해자의 요청사항
  - ③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하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제 11조에 따른 정식조사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.
- 제11조(정식조사) ① 원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조사를 요구하는 경우, 지체없이 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 한다.
  -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다만 특별한 사정

- 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. 이경우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정식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이관한다.
- ⑤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,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⑥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온라인,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12조(조사위원회)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.
  - ② 원장은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-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④ 정식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사건의 경위
    - 2. 피해자,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
    - 3.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
    - 4.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
    - 5.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
    - 6.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
    - 7.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(목격자, 이메일, 녹음, 메신저 대화내용, 일기, 치료기록 등)
    - 8.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, 적정한 징계수준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
- 제13조(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)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. 이 경우 원장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(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)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 서가 이관되면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.
  - ② 인사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    - 1.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
    - 2.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시,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    - 3.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
- 제15조(장계) ① 원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절차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16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의 보호)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.
  - ② 원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7조(사건의 종결)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.
  -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,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.
- 제18조(재발방지조치 등)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## 부 칙<2022. 12. 29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제1호]

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					
당사자	신고인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	피해자 ※ 신청인이 피해자 와 다른 경우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	행위자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	대면 상담신청 🗆 예			□ 아니오	
상 담 (신 청) 내 용	② 업무상 적정팀	범위를 넘을		고통을 주	· 관계의 우위를 이용,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 다.
요구사항	1. 당사자 간 i 3. 기타 (	해결(	) 2. 정	식조사(	)
처리결과 (담당자 기재란)					